

예 산 총 칙

2026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26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 (단위:천원)

구 분	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	482,650,449	14,479,513
일반회계		448,733,262	13,461,998
특별회계		33,917,187	1,017,516
	기타특별회계	33,917,187	1,017,516
	상수도사업특별회계	14,143,450	424,304
	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366,422	10,993
	발전소주변지역지원관리특별회계	1,231,746	36,952
	수질개선특별회계	15,521,531	465,646
	하수도특별회계	2,089,300	62,679
	주차장특별회계	564,738	16,942

제 2 조 세입·세출의 명세는 붙임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(채무부담행위) "해당없음"

제 4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2,500,000천원으로, 재해·재난목적예비비는 2,0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5,9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재무활동비,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.